



계단실에서 자재 운반 중 추락



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경공사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(보조공)가 인공토양포대(세로 70cm×가로 40cm×높이 15cm, 무게 약 12kg)를 옥상에서 부터 지상 14층까지 중앙계단을 이용하여 인력운반하던 중, 계단 단부에서 추락, 치료 중 사망



발생 원인

- 계단의 안전난간 미설치
 -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자재 인력운반작업 수행
- 인력운반 통로상부에 가시설물(고소작업대) 설치상태에서 인력운반작업 실시

TIP

안전작업

1 계단실에 안전난간 설치 철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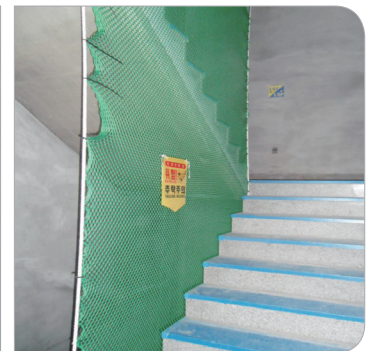
-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견고한 형태의 안전난간을 설치 후 작업 실시

2 인력운반작업 통행로 확보

- 인력운반 중인 작업통로상의 상부에 운반에 방해가 되는 가시설물(작업대 등) 제거 후 작업 실시



계단실 안전난간(시공 중)



계단실 내부 수직방망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(계단의 난간)



계단실에서 자재 운반 중 추락

건설중인 건물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